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91

발의연월일: 2025. 2. 19.

발 의 자: 조은희・박정하・신성범

강명구 · 서천호 · 김대식

김장겸 • 서지영 • 주진우

이만희 · 이달희 · 강승규

주호영 · 서범수 · 박성훈

의원(15인)

제안이유

결혼식 또는 결혼 관련 서비스 시장은 그 시장구조가 복잡하고,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청년층의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또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또는 결혼 관련 업계 대부분은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피해 구제가 곤란한 상황임. 특히 일회성 소비라는 시장의 특성상 불만이 있더라도 결혼을 마친 이후 적극적인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장의 자정 기능에 한계가 있음.

이에 결혼식장 대여업 및 웨딩플래닝(Wedding-planning) 관련 업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의 결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보험가입과 영업보증금 예치 등을 함으로써 해당 업종에 대해 공적영역에서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서비스업의 지원과 발전을 위하여 필 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결혼서비스 관련 거래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나. 결혼서비스업자는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서비스 거래질서 조성 및 유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 함(안 제5조).
-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6조).
- 라.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7조).
- 마. 누구든지 결혼서비스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 등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됨(안 제10조).
-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

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서비스업 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안 제11조).

- 사.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는 자 중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 치하여야 함(안 제12조).
- 아.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례 또는 공공기관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3조)
- 자. 결혼서비스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9 조까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서비스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결혼서비스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 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결혼서비스"란 결혼식장의 대여, 결혼식을 위한 상담, 결혼식 및 결혼과 관련된 사진촬영·물품대여·미용, 결혼준비의 대행 등 결혼식 또는 결혼과 관련된 제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결혼중개는 제외한다.
- 2. "결혼서비스업"이란 결혼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식을 위한 장소를 대여하는 영업
 - 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소비자로부터 결혼식 준비 일체를 위 탁받아 대행하는 영업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3. "공공예식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반에 개방하는 예식공간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결혼서비스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서비스업의 지원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서비스 관련 거래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결혼서비스업자의 책무) ① 결혼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이하 "결혼서비스업자"라 한다)는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서비스 거래질서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결혼서비스업자는 결혼서비스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결혼서비스업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의 진흥과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결혼서비스업자 및 결혼서비스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결혼식장대여업 등의 신고) ①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 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 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신고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교부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 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허가 또는 변경 신 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결혼식장대여 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제9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와 직권말소)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그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 하면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허위·과장 광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결혼서비스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 등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

- 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표준계약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 하고, 결혼서비스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2조(보험가입 등)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는 자 중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제13조(공공예식장의 개방 등)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유재산법」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은 결혼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 한 경우
- 3. 제12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5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결혼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 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 2.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영업정지 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과징금의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결혼서비스업자에게 제1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결혼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 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서비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한 금액은 부과· 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제17조(벌칙) 제15조에 따른 영업폐쇄 또는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과태료) ①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3항(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결혼식장 대여 서비스 또는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